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후변화영향평가 전문가 포함 〉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158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 기후변화영향평가 전문가 포함	3
※ 참고자료	7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7
2.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8

I. 제안경위

2024년 12월 31일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계획 또는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받게 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하도록 규정함.

이러한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의 조정,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평가 항목·범위를 결정하게 됨.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평가 방법과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른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영향평가 관련 전문가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참여에 관한 근거는 부재한

실정임.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후변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행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를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¹⁾,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소관 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결과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²⁾.

다만,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위원에 대하여 주민대표 등 민간전문가를 비롯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도록 하고,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기후변화영향평가분야 전문가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³⁾.

이에 개정안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회에 기후변화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④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방법, 제3항에 따른 검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평가 대상지역 설정) 평가 대상지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으로 하되,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변화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가 다를 경우에는 협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항목 등의 결정) ①계획수립기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별표 2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관련 사항이 포함된 평가준비서를 작성하고, 협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항목 등의 결정) ①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별표 2의 평가항목을 고려해 기후변화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협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3)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회) ②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에 포함시키려는 전문가를 ‘기후변화영향평가·건강영향평가평가분야 전문가’로 규정하여, 참여시켜야 하는 전문가의 분야에 대한 혼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후변화영향평가와 건강영향평가 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법문을 수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⁴⁾.

문 의 처
02)6788-5541

4) 가운뎃점(·)은 문맥을 보아 단어가 의미 단위로 묶여지도록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자료: 법제 기준과 실제, 국회사무처, 2024.5.) 가운뎃점(·)을 사용하여 절약되는 음절이 대부분 한두 음절 정도에 불과하면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으므로 줄여 쓰지 않고 정확하게 모두 표기(자료: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법제처, 2023.12.)하여야 함.

※ 참고자료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 법적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6조의3까지

□ 기능 및 운영주체

- (계획수립기관, 승인기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심의
- ※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협의회 심의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하여 사업자등이 환경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성·운영(법 제24조제3항)
-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정, 거짓·부실 작성 여부 판단, 약식절차에 의한 의견수렴 내용과 협의내용 조정,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조정 사항에 대한 이의 심의

□ 구성 : 10인 내외 (위원장 1인 포함)

- (위원장) 환경영향평가등 대상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 또는 협의기관의 장 등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
- (위 원) 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
 - ① 협의기관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 1명 이상
 - ② 계획 수립기관 장 또는 승인기관 장 등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 1명 이상
 - ③ 해당 계획 또는 사업,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1명 이상
 - ④ 협의기관 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1명 이상
 - ⑤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 1명 이상
 - ⑥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 장(협의기관이 아닌 경우만 해당)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 1명 이상
 - ⑦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각 1명 이상
 - 해당 계획·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 보건 등 건강영향평가 전문가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해양 관련 전문가 (연안육역이 포함되는 경우)

※자료: 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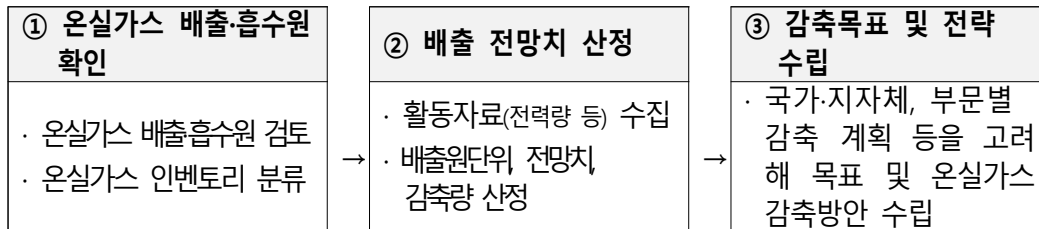
2.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 (추진배경) 국가의 주요 계획·사업에 탄소중립 내재화를 위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받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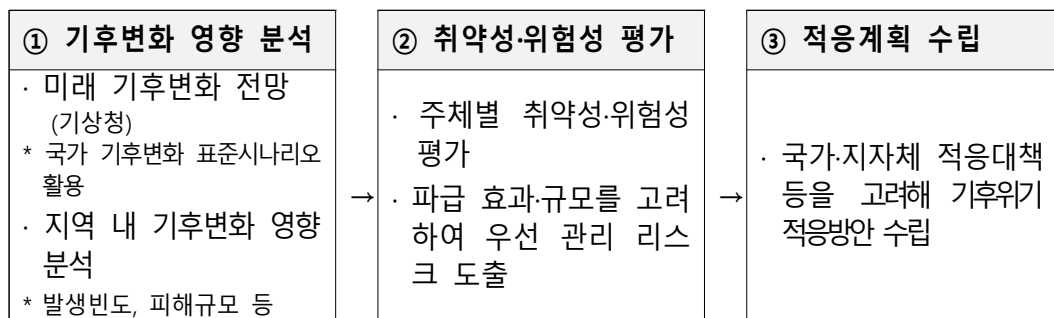
*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23조 관련

- (평가방안)^{<감축>}사업별 감축목표를 산정해 실효적인 감축방안 수립,
^{<적응>}계획별 우선 관리 리스크를 도출해 적응방안을 수립

- (감축) 국가·지역 감축목표, 온실가스 배출원·전망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축목표 설정 및 실효적 감축전략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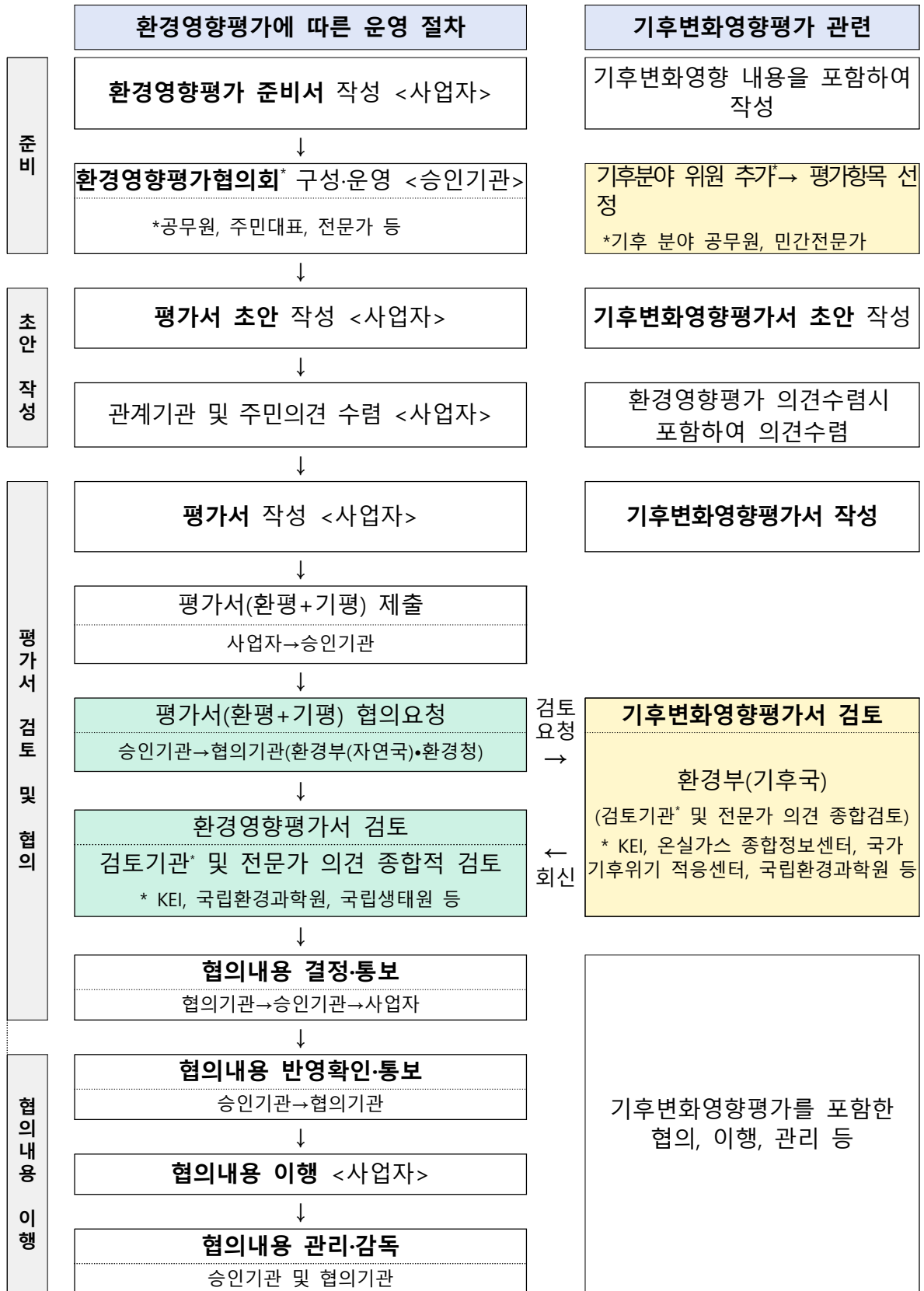


- (적응) 기후변화 전망, 취약성·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우선 관리 기후위기 리스크 도출 및 적응방안 수립



- (평가체계) 기후평가는 기후국에서 전담 검토 후 총괄부서(본부 자연국, 지방청)로 전달하는 기존 평가체계에 맞춰 진행
- 중점 검토를 위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시 기후전문가 포함 및 기후 전문기관에서 검토·평가 수행

□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상호간 추진체제도



□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시 기	구분	분 야	대 상		
			정책계획	개발기본계획	개발사업
229~	감축	에너지 개발	• 전력수급기본계획	• 전원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 발전소, 열발생설비 설치(1만kW 이상, 공장·산업용지 內 3만kW 이상) * 신·재생, 원자력E 제외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50만㎡ 이상)	-	•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 • 문화산업진흥지구, 유치지역, 외 국인투자지역 지정 • 협동화 실천계획 • 국가·일반·도시첨단 산업단지, 동공단지 지정* * 국가, 지자체 등이 1,000만㎡ 이상 신규 개발 시만 적용	• 단지조성사업, 자유무역지구 지정, 제조업 공장설립, 공업용지 조성, 산업기술단지 조성, 연구개발특구 조성
		도시개발 (100만㎡ 이상)	-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 도시·군 관리계획 • 도시개발구역 지정·계획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일반물류단지·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계획, 일반·도시첨단 물류 단지 지정 • 공공주택지구 지정 • 역세권개발구역 지정·계획 • 공동집배송센터개발 촉진지구 지정 • 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택지개발지구 지정, 택지개발계획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민간부문 제안사업 •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건설공사계획(500억원 이상)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 도시정비구역 지정	• 혁신도시개발사업 •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 도시개발사업 (단지, 시가지 조성 등) • 도시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 물류터미널·단지 개발사업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역세권개발사업(철도, 단지조성 등) •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 택지개발사업 • 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조성 사업,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 • 학교 설치 •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등)
	적응	수자원 개발	• 물 재이용 기본계획, 대 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유역 하수도정비계획,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	-
		항만 건설	-	• 항만기본계획, 항만재개발사업 계획	-
		산지 개발	• 사방사업, 산림, 산림문화·휴양, 전국임도 기본 계획 • 산림복지진흥계획	-	-
		하천의 이용 및 개발(20km 이상)	-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
	감축	도로 건설 (12km 이상)	•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구도 등의 건설공사 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로기본계획 * 고속국도는 제외	• 고속·일반국도, 지방도, 시·군·구도 등의 신설·확장
		공항 건설	-	-	• 공항 또는 육상비행장 신설, 활주로 건설(500m 이상),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사업(20만㎡ 이상)
		폐기물 처리시설	• 자원순환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 자원순환시행계획,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 가축분뇨 처리시설(100톤 이상/1일) • 중간처분 소각시설(100톤 이상/1일) • 최종처분 매립시설 *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면적 5만㎡, 용적 25m³ 이상 폐기물매립시설: 면적 30만㎡, 용적 330m³ 이상

※ 자료: 환경부